SURYUN ASIA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2F, S&M building, 120, Myeongdal-ro, Seocho-gu, Seoul, 06658, Korea Tel. +82-2-6251-1101 Fax. +82-2-6488-9965
(우06658)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2층) 전화: 02-6251-1101 팩스: 02-6488-9965 www.srlaw.co.kr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도시철도계획부/도시기반시설본부 지부근 팀장님

발 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정 은 숙

일 자 2020. 12. 24.

제 목 회사 분할 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상 지위의 승계 관련 동의 등 필요 여부에 대한 답변

위 제목 기재의 건에 관한 귀 시의 질의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의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질의의 요지

귀 시가 본건 질의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함)는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의 지분 10%를 보유한 건설출자자이고,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수급인입니다.

○ 대림산업은 2021. 1.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림산업이 영위하는 사업 중 건설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하여 가칭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이하 '디엘이앤씨'라 함)를 설립하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하여 가칭 디엘케미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가칭 디엘 주식회사(이하, '디엘'이라 함)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

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면 대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 등은 디엘에 존속하게 되고, 대림산업의 공사도급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디앨이앤씨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귀 시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디엘)가 사업시행자의 건설출자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주무관청에 통지 필요 여부

나. 디엘이앤씨가 본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Ⅱ.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규정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

을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분할계획서

2. 분할의 방법

(5)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제24조(설계, 공사의 도급)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에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의사항 가.항에 대한 답변

존속분할[1]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존속하므로 분할 전 회사의 법인격은 분할 후의 존속회사에 그 동일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단순분할[2]의 경우 분할로 인해 분할계획서에서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분할 후 존속회사에 잔존합니다.

본건에서 대림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 등을 분할 후 존속회사인 디엘이 보유하기로 하였는바, 디엘은 대림산업과 그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본건 분할로 인하여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실시협약 제7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은 필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건 분할로 인한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없고, 본건 실시협약 상 분할에 관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분할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분할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신설회사에 출자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2) 회사의 영업을 수개로 분할하고 분할된 영업 중 1개 또는 수개를 각각 출자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3. 질의사항 나.항에 대한 답변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해 분할계획서에서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신설회사에 이전됩니다(상법 제530조의10). 이러한 이전에는 별도의 이전행위나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고 분할로 인한 등기를 한 때에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가에 대하여, 상법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해 신설회사에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채권자는 채무의 승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분할로 인한 채무의 승계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3)]

본건에서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문을 출자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하는 경우 디엘이앤씨는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대림산업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이러한 승계는 도급인인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본건 실시협약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건 분할계약서 제2조 제5항은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분할에 있어서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의문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담당변호사 정 은 숙